

2024년 재무위험관리사 문제집 정오표
[2024년 7월 10일 기준]

페이지	정정 전	정정 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18	<p>핵심탐구</p> <p>대외지급 신고면제 사유</p> <p>④ 전년도 수입실적 5천만달러 이상 기업의 송금방식 무역대금의 지급</p>	<p>핵심탐구</p> <p>대외지급 신고면제 사유</p> <p>④ 전년도 수입실적 3천만달러 이상 기업의 송금방식 무역대금의 지급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31	<p>핵심탐구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f080f0;"> <th>차주구분</th> <th>차입기간</th> <th>차입금액</th> <th>기타조건</th> <th>신고통기관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영리법인</td> <td rowspan="2">제한없음</td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fff;">3천만불 이하</td> <td>과거 1년간 누계</td> <td>외국환은행신고</td> <td>지정은행</td> 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fff;">5천만불 초과</td> <td>과거 1년간 누계</td> <td>기획재정부신고</td> <td>지정은행경유</td> </tr> <tr> <td>비영리법인 / 개인 / 개인사업자</td> <td>제한없음</td> <td>제한없음</td> <td>타인담보 / 보증 포함</td> <td>한국은행신고</td> <td>지정은행경유</td> </tr> <tr> <td>정유 / 석화천역가스 수입업자</td> <td>단기</td> <td>제한없음</td> <td>수입대금결제조건 (신용장 송금)</td> <td>외국환은행신고</td> <td>지정거래제외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외국인투자기업</td> <td rowspan="2">단기</td> <td>투자금액 100%</td> <td>고도기술업체</td> <td>외국환은행신고</td> <td>지정은행</td> </tr> <tr> <td>투자금액 50%</td> <td>일반제조업체</td> <td>외국환은행신고</td> <td>지정은행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차주구분	차입기간	차입금액	기타조건	신고통기관	비고	영리법인	제한없음	3천만불 이하	과거 1년간 누계	외국환은행신고	지정은행	5천만불 초과	과거 1년간 누계	기획재정부신고	지정은행경유	비영리법인 / 개인 / 개인사업자	제한없음	제한없음	타인담보 / 보증 포함	한국은행신고	지정은행경유	정유 / 석화천역가스 수입업자	단기	제한없음	수입대금결제조건 (신용장 송금)	외국환은행신고	지정거래제외	외국인투자기업	단기	투자금액 100%	고도기술업체	외국환은행신고	지정은행	투자금액 50%	일반제조업체	외국환은행신고	지정은행	<p>차입금액</p> <p>3천만불 이하, 3천만불 초과</p> <p>-> 5천만불 이하, 5천만불 초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.</p>
차주구분	차입기간	차입금액	기타조건	신고통기관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영리법인	제한없음	3천만불 이하	과거 1년간 누계	외국환은행신고	지정은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5천만불 초과	과거 1년간 누계	기획재정부신고	지정은행경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영리법인 / 개인 / 개인사업자	제한없음	제한없음	타인담보 / 보증 포함	한국은행신고	지정은행경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유 / 석화천역가스 수입업자	단기	제한없음	수입대금결제조건 (신용장 송금)	외국환은행신고	지정거래제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외국인투자기업	단기	투자금액 100%	고도기술업체	외국환은행신고	지정은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투자금액 50%	일반제조업체	외국환은행신고	지정은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<p style="color: red; font-weight: bold;">[핵심탐구 표 아래 내용 보장]</p> <p>1. 영리법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-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제1호의 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자·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 <p>5천만불 이하*</p> <p>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(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)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금융 여부를 명시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(현지금융의 경우 다른 거주자가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),</p> <p>5천만불 초과**</p> <p>**다만, 미화 5천만불(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, 현지금융 자금은 산업에서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화 5천만불 초과외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신고하여야 한다.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	<p>2. 비영리법인 / 개인 / 개인사업자 (기타)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	
136	<p>[핵심탐구 현지금융 (1) 내용을 보강합니다.]</p> <p>* "현지금융"이라 함은 거주자 및 제7-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(증권발행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</p> <p>(1) 현지금융을 받은 자의 보고(제7-14조의2)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(국내 다른 기업과 공동출자하여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출자지분 이 가장 많은 기업, 출자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가장 큰 기업)가 현지금융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채권은행을 현지금융관련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-18 조에 따라 인정된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</p> <p>- 거주자의 현지법인(거주자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를 포함한다) - 거주자의 해외지점(제9-19조의 규정에서 정한 비독립채산제 해외지점을 제외한다)</p> <p>- 현지금융의 경우에는 변경 보고 또는 신고를 하거나 현지법인등과 국내 거주자간의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의 국내 유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국내로 유입할 수 없다</p> <p>- 현지금융을 받은 자(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를 포함한다) 차입한 자금을 신고 또는 보고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 반기보를 당해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의 장에게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.</p>	
136	<p>[18번 문제] 다음 중 현지금융에서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? ① 현지법인 등이 거주자의 보증 등 없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 ② 거주자가 외화증권 발행방식에 의하여 미화 3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지금융을 받고 자 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④ 현지법인 등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</p>	<p>[18번 문제] 다음 중 현지금융에서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? ① 현지법인 등이 거주자의 보증 등 없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 ② 거주자가 외화증권 발행방식에 의하여 미화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지금융을 받고 자 하는 경우 ③ <u>거주자인 해외지점이</u>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④ <u>거주자의 현지법인이</u>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</p>
136	<p>[출제포인트] ②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사항이고 ③, ④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사항이다.</p>	<p>[출제포인트] <u>보증 등 없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</u> <u>신고 면제대상이다.</u></p>

143	<p>[3번 문제 해설]</p> <p>동일자·동일인 기준 미화 1만달러 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통보의무가 제외된다.</p>	<p>[3번 문제 해설]</p> <p>동일자·동일인 기준 미화 2만달러 초과의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통보의무가 제외된다.</p>
143	<p>[5번 문제]</p> <p>①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[5번 문제]</p> <p>①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
143	<p>[6번 문제]</p> <p>비거주자에 대한 동일인 기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여기서의 일정한 금액은?</p>	<p>[6번 문제]</p> <p>비거주자에 대한 동일인 기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여기서의 일정한 금액은?</p>
145	<p>[12번 문제]</p> <p>② 영리법인이 미화 3천만달러를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>[12번 문제]</p> <p>② 영리법인이 미화 5천만달러를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
	<p>끝</p>	<p>끝</p>